

<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 >

- 제도 시행일(25.7.1.)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여 '25.7.1. 이후 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사후지급금(50%)이 지급되는지?

□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시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 지급 규정은 **제도 시행일(25.7.1.) 이후**

-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(시행령 부칙 제2조, 대통령령 제35575호)
- 이에, 제도 시행일(25.7.1.) 전에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

- 제도 시행일(25.7.1.) 이후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,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(50%)의 신청 시점은?

□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(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)

- 이에,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점 이후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(50%) 신청 가능